



주목할 만한 내용

01. 개인소득세 ("PIT")

- Covid-19 관련 비용에 대한 PIT
-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실업보험 ("UI") 기금에서 지원 정책

02. 법인세

- 은행예금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 무역활동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 선물 가트와 관련 비용에 대한 대한 손금산입

03. 간접세

- 부속지점으로 고정자산을 이전할 때 VAT 영수증 발행
- 수출가공기업("EPE")이 국내기업에 가공 서비스를 제공에 대한 VAT 및 영수증 사용
- 반환.재수입된 수출품의 경우 환급 받은 VAT 처리

04. 외국인계약자세

- 4자 판매거래에 대한 FCWT
- 국제채권 발행에 대한 FCWT

05. 무역 및 관세

- 수출 제조를 위한 가공 활동으로 인한 완제품 구매에 대한 세관 신고서
- EVFTA에 따른 원산지 자율 증명 유효성
- 무역구제조치 대상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 수출 제조를 위해 내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는 수입 관세가 면제되지 않다.
- 수출 제조를 위해 내수기업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는 수입 관세 과세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Covid-19 관련 비용에 대한 PIT

COVID-19 기간 동안 회사가 “Three in-place” (직원이 회사에서 머무르며 일해야 함) 를 시행하고 직원들에 대한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집단기준으로 침낭, 개인 위생 도구, 식수, 지원수당, COVID 테스트 등의 지출이 발행한 경우 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지출이 개인 수령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 PIT 계산 시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베트남 입국시 격리 비용, 비자 및 항공료를 지급한 경우 관련 비용이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계산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빈쯔 세무국의 2021년 10월 7일 제14626/CTBDU-TTHT 호 OL)

신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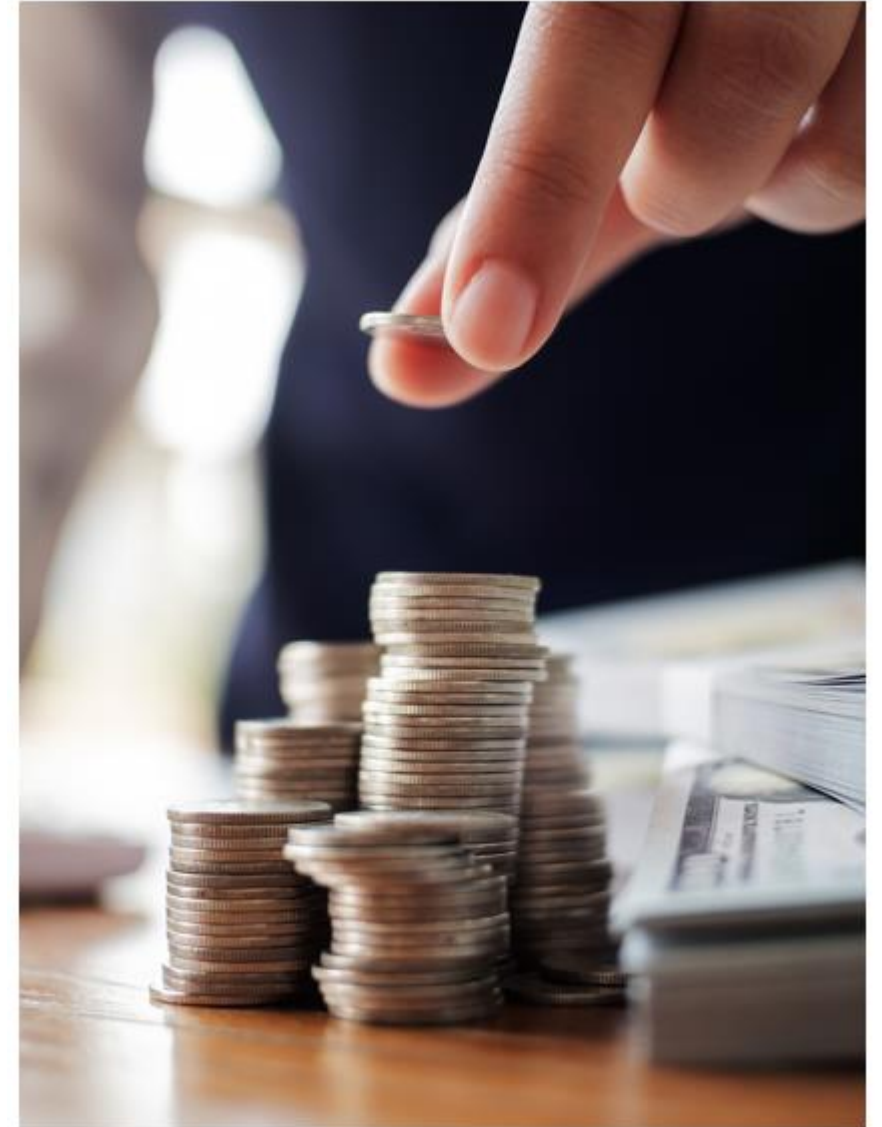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실업보험 (“UI”) 기금에서 지원 정책

2021년 9월 24일 베트남 정부는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실업보험 기금에서 지원에 대한 제116/NQ-CP호 결의서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한 총기간에서 실업수당을 실제로 받은 해당시간을 뺀 것으로 정한 기간에 따라 1인당 VND 1,8mil에서 VND 3,3mil까지의 일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고용주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실업보험 납입율이 1%에서 0%로 인하된다.

본 결의서에 따른 적용 대상, 지급수준, 수행 기간에 대한 딜로이트 베트남의 세부내용은 2021년 10월 4일 infographic을 참고해 주십시오.

(2021년 9월 24일 제116/NQ-CP 호 결의서)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세 ("CIT")



지침 문서

은행예금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은행예금 이자수익에 대한 CIT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세무총국은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밖에서 발생하는 은행예금 이자수익은 CIT 인센티브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하였다.

(2021년 8월 30일 세무총국의 제3253/TCT-CS 호 OL)

무역활동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기업이 박짱 (Bac Giang) 산업공단 관리위원회 (IZ)에 의해 위치에 따른 CIT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은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 CIT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소득이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 모든 총 소득이다. 구체적으로:

- 기업이 무역활동을 추가하지만 최초 프로젝트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산업공단에서 수행된 무역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기존 프로젝트의 잔여기간동안 CIT 인센티브 또는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기업이 산업공단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밖에서 무역활동을 수행하므로 발생한 수익의 경우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다.

(2021년 8월 21일 박짱 (Bac Giang) 세무국의 제4093/CTBGI-TTHT 호 OL)

선물 가트와 관련 비용에 대한 대한 손금산입

회사가 VinID 카드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선물로 줄 때 VAT 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판매자의 지급 수령증 및 회사의 경영 생산 활동을 위해 VinID 카드를 사용에 대한 관련 지원서류를 기반으로 해당 지출이 제96/2015/TT-BTC 호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CIT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가능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노이 세무국 2021년 9월 14일 제34762/CTHN-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지침 문서

부속지점으로 고정자산을 이전할 때 VAT 영수증 발행

회사가 VAT 과세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조·경영 활동을 위한 부속지점의 100% 자본금을 소유한 경우 고정자산을 부속 지점으로 이전할 때 VAT 영수증 발행 및 VAT 신고가 필요없다.

회사가 고정자산을 이전할 때 자산출처에 대한 지원서류 및 이전 결정서를 있어야 한다.

회사가 고정자산을 독립지점으로 이전할 경우 규정에 따라 VAT 영수증을 발행하고 VAT를 신고해야 한다.

(빈즈 세무당국의 2021년 8월 13일 제/12494/CTBDU-TTHT호 OL)

수출가공기업 ("EPE") 이 국내기업에 가공 서비스를 제공에 대한 VAT 및 영수증 사용

국내 기업에 제공되는 가공 서비스는 VAT 10%가 적용되며 EPE가 해당 가공활동에 대해 별도로 VAT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한다.

EPE가 다음과 같은 02 시나리오에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 회사가 공제 방식으로 VAT를 납부하는 경우 VAT 영수증을 발행한다.
- 회사가 직접 방식으로 VAT를 납부하는 경우 "비관세 지역에 위치한 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하는 판매 영수증을 발행한다.

(하남 세무국의 2021년 8월 03일 제/2719/CT-TTHT 호 OL)

반환·재수입된 수출품의 경우 환급 받은 VAT 처리

세무총국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반환·재수입된 수출품의 경우 기업이 매입 VAT를 환급 받았으면 규정에 따라 환급된 VAT를 반납해야 하고 해당 연체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1년 5월 19일 제/1613/TCT-KK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4자 판매거래에 대한 FCWT

홍콩 A회사가 베트남 B회사로 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홍콩 C 회사에 판매하고, 베트남 B회사가 배달 당사자, 베트남 D회사가 수령 당사자로 지정하므로 4자 판매 및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D회사가 해당 4자 계약에 따라 배달 당사자로 지정된 B회사로 부터 물품을 받을 때 E21모드(가공용 무상수입)로 내국 수입한 후 C회사에 가공품을 반환하는 경우 FCWT가 부과되지 않다.

(흥이엔 세무국 2021년 9월 21일 제/4384/CTHYE-TTHT 호 OL)

국제채권 발행에 대한 FCWT

회사가 국제채권 발행과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베트남 외에서 제공 및 소비된 조건을 충족하면 베트남 FCWT가 부과되지 않다.

(짱닌 세무국의 2021년 7월 15일 제/5425/CTQNI-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출 제조를 위한 가공 활동으로 인한 완제품 구매에 대한 세관 신고서

기업이 외국무역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공 완료 후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가공 목적이 아님) 가공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기업은 아래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

- 새로운 세관 신고서를 등록한다: 모드 A11- 사업 활동 및 국내 소비용 수입 또는 모드 A12- 제조용 수입;
- 모드 A11, A12에 따라 수입 관세 및 기타 관련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다.

제조 과정 후 완제품을 해외 또는 비관세 구역으로 수출할 경우 기업은 수출 물품 제조의 자재로 사용된 가공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관세 총국의 2021년 9월 13일 제4395/TCHQ-TXNK호 OL)

EVFTA에 따른 원산지 자율 증명 유효성

관세 총국에 따라 EU 수출업체가 발급한 원산지 (자율 증명) 신고서가 제 11/2020/TT-BCT호 시행 규칙에 적합하면 원산지 (자율 증명) 신고서상 HS 코드와 REX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정보의 차이는 문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관세 총국의 2021년 9월 20일 제4523/TCHQ-GSQL호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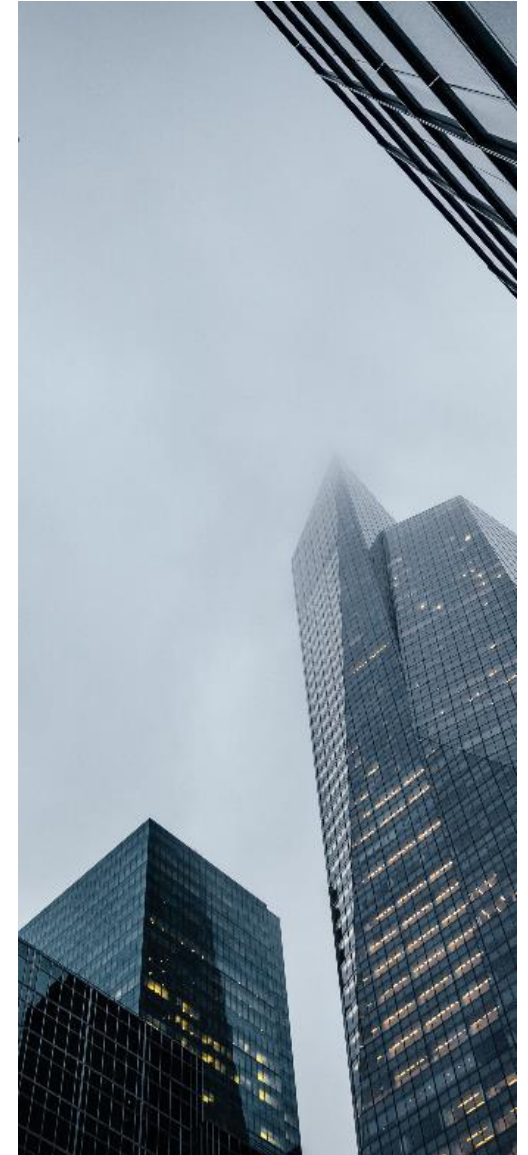
무역구제조치 대상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1. 수입된 강철 도금 제품의 경우:

기업이 제품이 중국, 홍콩 및 한국 이외의 다른 국가/영토에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 ('C/O')를 제출하는 경우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다.

기업이 C/O 대신 원산지 (자율 증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며 세관 당국은 C/O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2. 영사관/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원산지 (자율 증명) 확인서 또는 제조사에서 발행한 품질검사증명서의 사용을 요청한 부분: 강철 도금 제품의 덤핑방지조치 적용에 대한 1차 심사결과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2020년 10월 20일 제2717/QD-BCT호 결정문에 따라 CPTPP, EVFTA 및 ATIGA 협정에 관한 베트남 시행 규칙을 준수하는 C/O 및 원산지 (자율 증명) 신고서만 허용된다. (관세 총국의 2021년 10월 8일 제4769/TCHQ-GSQL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출 제조를 위해 내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는 수입 관세가 면제되지 않다.

관세총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수출가공기업의 직접 구매계약 또는 외국무역업자의 구매계약에 따라 수출가공기업으로부터 수출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이러한 내국 수입 원자재는 제18/2021/ND-CP호 시행령 제1조 6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수입 신고서는 모드 E31-수출용 생산 자재 수입에 따라 적용된다.

그런데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는데 해외 기업이 지정한 다른 국내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수령하면 이 내국 수입 원자재는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기업은 모드 A11- 사업 및 국내 소비용 수입 또는 모드 A12- 제조용 수입으로 내국 수입 신고를 등록하고 각 수입 방식에 따라 수입 관세를 납부한다. 납부된 수입 관세 금액은 완제품 생산 후 수출 시 환급 받을 수 있다.

(관세총국의 2021년 7월 12일 제3487/TCHQ-TXNK호 OL, 2021년 7월 30일 제 6744/TXNK-CST호 OL, 제7074/TXNK-CST호 OL)

(관세총국의 2021년 9월 14일 제6471/TXNK-CST호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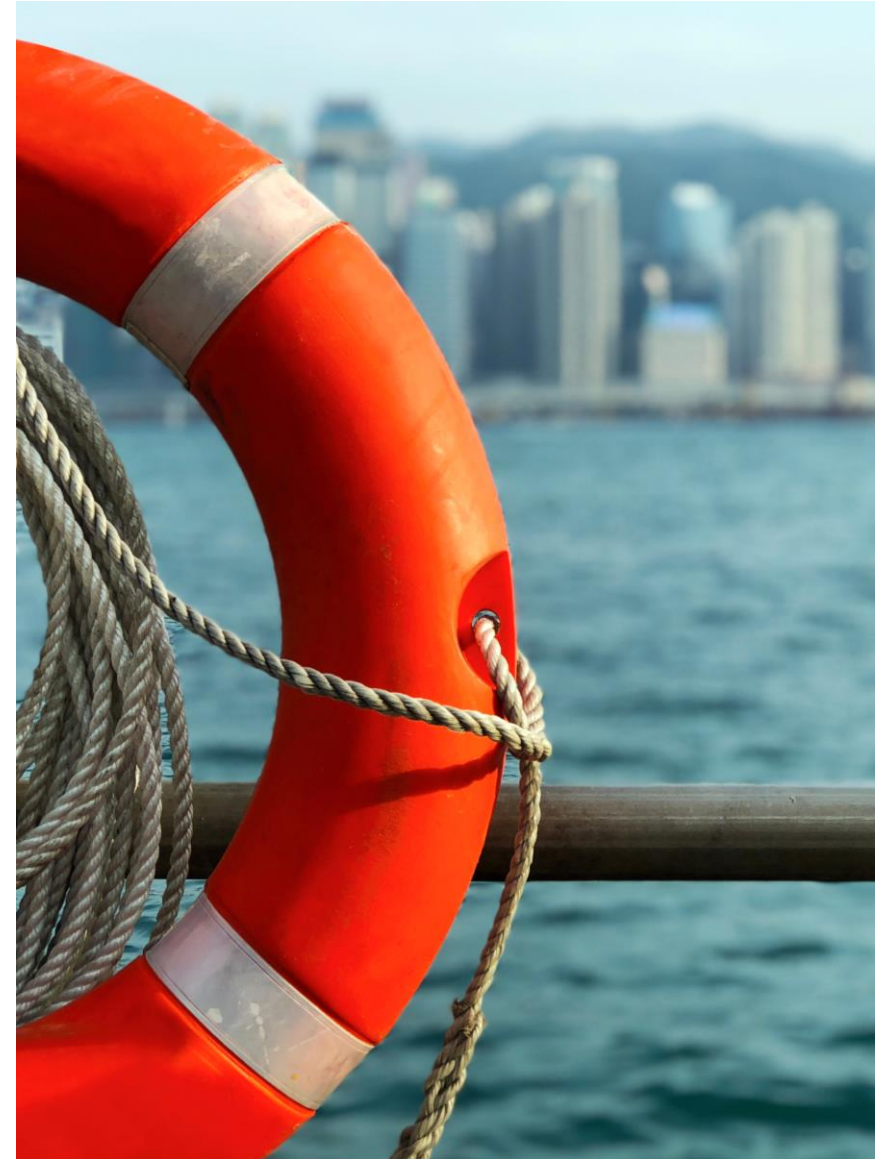
수출 제조를 위해 내수기업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는 수입 관세 과세

관세총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수출가공기업(EPE)와 직접 구매계약 또는 외국무역업자와의 구매계약에 따라 수출가공기업(EPE)으로부터 수출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이러한 내국 수입 원자재는 제18/2021/ND-CP호 시행령 제1조 6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수입 신고서는 모드 E31-수출용 생산 자재 수입에 따라 적용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면서 해외 기업이 지정한 다른 국내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수령하는 경우 이러한 내국 수입 원자재는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기업은 모드 A11- 사업 및 국내 소비용 수입 또는 모드 A12- 제조용 수입으로 내국 수입 신고를 등록하고 각 수입 방식에 따라 수입 관세를 납부한다. 납부된 수입 관세는 완제품 생산 후 수출 시 환급 받을 수 있다.

(관세총국의 2021년 7월 12일 제3487/TCHQ-TXNK호 OL, 2021년 7월 30일 제 6744/TXNK-CST호 OL, 제7074/TXNK-CST호 OL)

(관세총국의 2021년 9월 14일 제6471/TXNK-CS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ipark@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Making an impact since 1991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